

2026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자료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민의 든든한 은퇴 노후 가이드

 KB 국민은행



EXPERIENCE



GROWTH



ADVANCED TRAINING



PROBLEM
SOLVING



EDUCATION



MARKET-BASED
THINKING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란?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투자 교육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실시됩니다.

본 교육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 및 동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입니다.

가입자교육 내용

제도	교육 내용
공통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가입자의 현재 재무상황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각종 상황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제도일반에 대한 내용 제도별 특징과 차이점을 안내하고, 중도인출, 지급절차, 과세 체계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DB	회사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내용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평균 퇴직급여,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현황 등을 안내
DC /IRP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전략에 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중하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 상황 부담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상황 안내

가입자교육 이수방법

KB국민은행은 서면, 온라인,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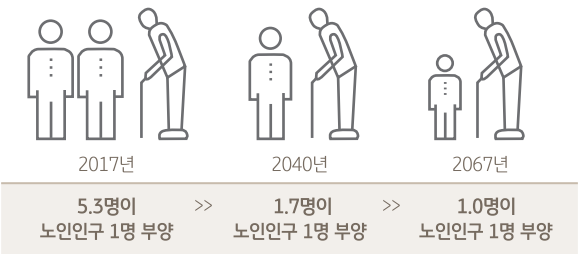
노후준비의 중요성	4
생애설계 시 고려사항	5
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	6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8
퇴직급여 수급요건	13
퇴직급여 지급절차	13
퇴직연금 과세체계	14
중도인출/담보대출	15
퇴직연금 계약이전	16
퇴직연금 폐지·중단·기업의 도산	16
급여 or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7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전략	18
다양한 운용 상품	20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2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23
부가서비스 안내	26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	28

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

3층 연금구조를 통한 은퇴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 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준비하여 부족한 노후자산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9.3.27. 공표

3층 연금구조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연금구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구조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2018,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

한국 가구의 연금보유
유형 중 1위는?

여력부족형 31.1%

3층 연금구조를
이루고 있는 유형은?

연금종합형 18.3%

절세지향형 20.2%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 가구가 3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년 전에 비해 가장 크게 늘었다**

연금 보유 개수를 ‘연금보유에 따른 5개 가구유형’으로 살펴보면 ‘연금 종합형’이 가구당 평균 4.9개로 가장 많은 연금을 보유하고 다음으로 ‘절세지향형’이 가구당 3.9개의 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 ‘종합지향형’이 가구당 2.7개를, ‘관심부족형’은 가구당 2.5개를, ‘여력부족형’ 경우 가구당 1.2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다.

	연금종합형	절세지향형	관심부족형	종합지향형	여력부족형
3층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구성비	22.4%	15.7%	20.5%	20.5%	20.9%
연령	30~50대	30~50대	20~50대	50~60대	60대 이상
직업	전문직/사무직 관리직/기술직	사무직/기술직 교사/공무원	전문직/사무직 생산/서비스직	자영업자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300~700만원 이상	300~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 자산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 납입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수령시 비과세

**세제적격 개인연금 : 납입시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발생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제도 특징

-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됨
- DB형 가입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불가

퇴직 급여 계산식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



* 평균임금 : 300만원, 근속연수 : 5년
퇴직급여 1,500만원 (300만원 X 5)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제도 특징

-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 * 도 가능
-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이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연 9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10%(300만원한도)]입니다.
- * ISA 만기계좌를 IRP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납입 가능
-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분 추가납 가능(1억원한도)
- *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 (주택포함)의 양도차익 추가납입 가능 (양도일로부터 6개월이내,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포함 1억원 한도)

퇴직 급여 계산식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수수료 부담주체

회사부담금 : 회사

개인추가부담금 : 가입자
(단, 규약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퇴직 급여 계산법

* 5년간 회사부담금 : 1,200만원, 5년간 운용수익 : 300만원
퇴직급여 1,500만원 (1,200만원 +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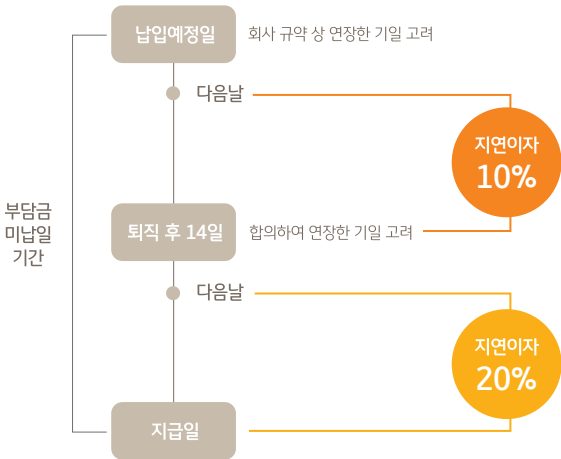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부담금 납입 시기와 지연 이자

- 근로자 운용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적기에 회사의 부담금 납입 유도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 발생

* 지연이자율 : 납입예정일로부터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납입일까지 연 20%



※ 근로기준법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규정
※ 적용제외 사유 : 사업장의 도산, 타 법령상의 계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기업형IRP는?

-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해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IRP를 설정한 경우, 규약 신고의무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제도

표준형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제도 특징

-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할 표준화된 규약과 계약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이 그 표준 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
- 제도 도입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유용함
- 표준규약별 합산 적립금으로 운용수수료율이 결정되어 관리수수료 절감

표준규약 내용

- 일반적인 확정기여형(DC)규약에 포함되는 항목
- 표준규약을 통해 설정된 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 제도의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준계약서 내용

-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절세 목적 : 퇴직 전 IRP 개설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X10%(300만원 한도)



근로자 (가입자)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도 가능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

이직 또는 퇴직 시 :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 계좌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 이전

제도 특징

-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 가능
- *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수수료 부담주체

가입자

IRP로 이전 예외 사유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 ②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⑥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의 세제혜택

-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세금감면

- *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 + [ISA 만기계좌 전환금액 × 10%(300만원 한도)] 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가입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 * ISA 만기계좌를 IRP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 추가입금 가능
-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분 추가납 가능(1억원 한도)
- *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포함)의 양도차익 추가납입 가능(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 포함 1억원 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 * 실제 연금 수령기간: 10년이하(30%), 10년초과~20년이하(40%), 20년초과(50%)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 연금계좌평가액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해에는 연금수령기준일,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1월 1일의 전일차 평가금액

퇴직연금 수급요건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 요건
연금	만55세 이상으로서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가입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만 55세 이상 요건만 충족시 수령 가능)
일시금	IRP강제이전 예외사유(만55세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가입자 중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최소연금수령기간

-연금계좌 가입일이 2013.02.28 이전인 계좌 : 5년

-연금계좌 가입일이 2013.03.01 이후인 계좌 : (1)과 (2) 중 긴 기간

(1) 10년 -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연금수령기준일까지의 기간)

(2) 5년

퇴직연금 지급절차

STEP 1 >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STEP 2 >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퇴직신청서)



STEP 3 > 회사(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지시



STEP 4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상품매도지시
(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 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STEP 5 > 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STEP 6 > 일시금 수령 (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 (55세 이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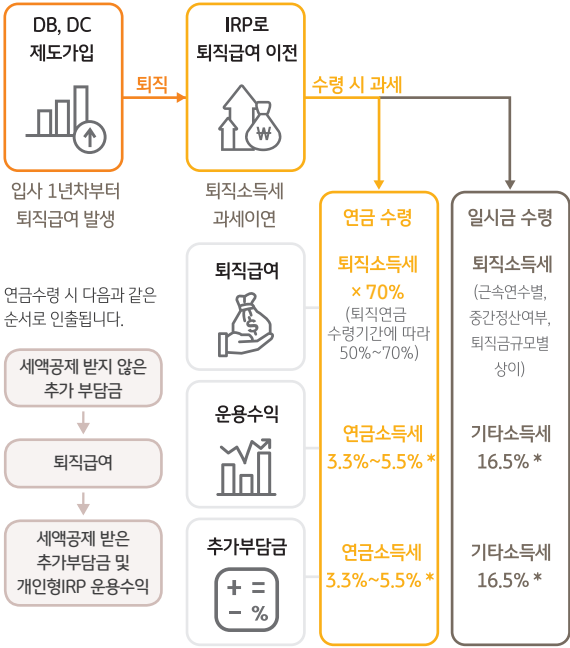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3단계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 과세는 1)부담금 납입, 2)적립금 운용, 3)퇴직급여 수령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1), 2)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3)단계에서 실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IRP의 절세 효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향후 과세 시에는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령 전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세금도 재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및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가능
※ 과세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며,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대상 제외
※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 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IRP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 지방 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하고,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 연금 수령 시 80세 이상 : 3.3%, 70~79세 : 4.4%, 55~69세 : 5.5%(지방소득세 포함)

중도인출/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	중도인출	담보대출*
확정급여형 DB	불가능	시행 불가능
확정기여형 DC, 기업형 IRP	가능	미시행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능	미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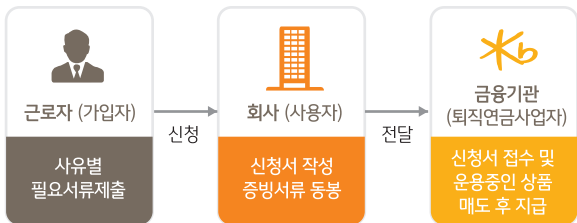
* 담보대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급액 변경에 따른 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음

중도인출 법정 사유

구 분	상 세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요양 사유 확인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개인회생 /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중에 신청
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개인형IRP는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부담금액 조건 없음)

중도인출 신청 프로세스



퇴직연금 계약이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변경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은 일반적으로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전되지만, 동일제도간에서 이전하는 경우 운용 중인 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실물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물 이전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운용 상품 및 상대방기관에 따라 실물로 이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합병/분사, 다른제도로 이전, 운용기관과 자산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계약이전 사유

- 1.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 2. DC형 또는 기업형IRP의 일부 가입자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DB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 4. 합병,분사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 5.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경우

STEP 1 >

규약 변경 후
지방노동관서
신고수리

*IRP는 비대상

STEP 2 >

신규 사업자
계약 체결

STEP 3 >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STEP 4 >

신규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 폐지·중단·기업의 도산

폐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때 적립된 금액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2~5항)
중단	회사의 재정압박 또는 적립금 부족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제도의 중단으로 봅니다. 중단된 경우에도 급여지급, 적립금운용, 가입자교육 등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중단 기간의 업무처리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도산	기업의 도산 및 폐업 등으로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당사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련 업무 중단*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적용

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 미청구 퇴직급여 수령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퇴직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의 수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1) 대상 : KB국민은행에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폐업회사의 근로자(가입자) 혹은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사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 (2) 신청방법 : 가입자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 신청
- (3)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추가 서류
 - 1) KB국민은행이 회사의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사실 확인 서류 ①~③중 하나
① 회사의 폐업사실확인서(국세청 휴폐업조회표 포함)
②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확인서류
③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2)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사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①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확인서류
- (4) 수령방법 :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급여 or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
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확정급여형(DC) / 기업형IRP 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평균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 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예시) 기본급, 직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 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 등. 예시) 경조금, 위로금, 출장비, 차량유지비, 보험보조금

※ 위 예시 항목은 각 회사의 임금항목의 실질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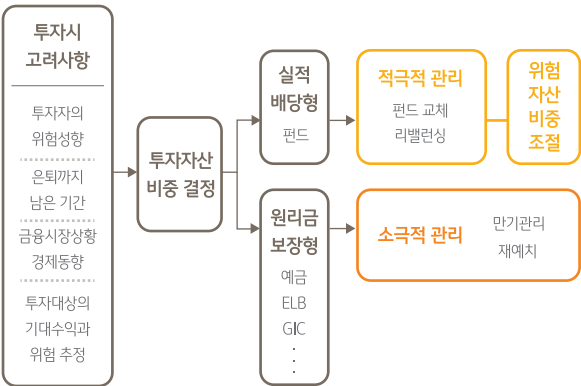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전략

퇴직연금을 노후자산으로 장기간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할까요? 연금으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면 투자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한 의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위험성향, 소득, 자산, 건강 상태,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살펴본 다음, 금융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산 비중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가지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자산구성비율을 정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유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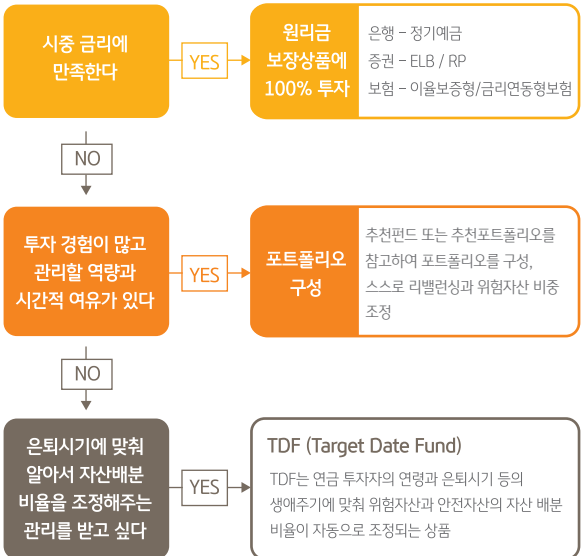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수익률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펀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아 비중이 커진 자산을 처분하고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중에서는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 내 위험자산의 비중을 차츰 낮추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자신이 없다고 노후자금을 모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맡겨 두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모든 투자과정에 일일이 개입한다고 해서 투자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처음 상품을 고를 때 전문가의 간단한 도움을 받더라도 이후부터는 관리에 크게 신경쓰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TDF(Target Date Fund) 같은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연금 투자 상품 고르는 법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전략

투자성향별 자산구성

투자 성향	성향별 특징	자산구성(예시)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유형	원리금보장형 100%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주식비중 20% 이내
위험중립형	투자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주식비중 30% 이내
적극투자형	투자원금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성향	주식비중 50% 이내
공격투자형	시장 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성향	주식비중 70% 이내

다양한 운용상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특 징	투자 원금과 이율(매수시점에 약정 /고시된 금리)이 보장된 반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 될 수 있음	상품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배분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종 류	정기예금, ELB/DLB, 이율보증형 보험, 발행어음, RP, 국채 등	공모펀드(TDF 등), 사모펀드, ETF, ELS

정기예금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매수시점의 해당 금융기관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구 분	상품 상세
만기별 종류	일단위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등
예금자 보호(DC/IRP)	가능
상품 제공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원리금보장 ELB/DLB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구 분	상품 상세
투자기간	1년 / 2년 / 3년 / 5년 등
매수시기	발행사의 발행 일정 등을 확인 후 매수 가능
예금자보호(DC/IRP)	불가

이율보증형 보험

이율보증형 보험(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은 납입된 원금을 납입 당시의 적용 이율로 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구 분	상품 상세
투자기간	1년 / 2년 / 3년 / 5년 등
예금자 보호(DC/IRP)	가능

펀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수익자)에게 배분해주는 상품입니다.

구 분	특 징
수수료	펀드운용 및 판매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운용, 판매, 수탁, 사무보수 등이 있으며, 일부 펀드의 경우 환매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있음
매도기준가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매도주문일로부터 2~3영업일(T+1~T+2)의 기준가가 적용되며, 국내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는 매도주문일로부터 3~4영업일(T+2~T+3)의 기준가가 적용

※ 상기 안내된 내용은 일반적인 국내투자 펀드기준 내용으로 상품별 수수료 및 매도기준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를 제외한 상기 안내된 상품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이며, 퇴직연금 사업자별 제공상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DB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신규고객

01 신규가입	02 입금 후 운용지시없음	03 다음날 가입 자에게 통지 "2주 후 디폴트 옵션 적용 예정"	04 통지 후 2주 경과	05 디폴트옵션 운용
------------	----------------------	--	---------------------	-------------------

기존고객

01 상품 만기일	02 운용지시없이 4주경과	03 가입자에게 통지 "2주 후 디폴트 옵션 적용 예정"	04 통지 후 2주 경과	05 디폴트옵션 운용
-----------------	----------------------	---	---------------------	-------------------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

퇴직연금 DC, IRP 제도 가입자



DC 	KB 국민은행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정보를 제공
	기업	노사합의를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개인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정보를 제공 받고, 상품 선택

기업형/개인형 IRP 	KB 국민은행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정보를 제공
	개인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퇴직연금 잔고조회, 상품매매 등의 거래를 KB퇴직연금, KB스타뱅킹(스마트폰)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접속)

검색창에 **국민은행 퇴직연금** ▼ **검색**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퇴직연금 메뉴 위치

1 메인 상단 퇴직연금 클릭



KB스타뱅킹 (스마트폰 어플)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애플 iOS(App store) 에서 ‘국민은행’으로 검색 후 <KB스타뱅킹> 다운로드!

KB스타뱅킹 퇴직연금 메뉴 위치

1 메인 상단 전체메뉴 클릭 2 퇴직연금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KB스타뱅킹 : 수익률 One-Click 조회

로그인 한번으로 퇴직연금계좌 수익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용현황 클릭



2 퇴직연금 수익률 조회



KB스타뱅킹 : 운용상품 변경하기

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변경하거나 변경일 이후 입금될 자산의 운용상품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용관리 클릭



2 상품변경 방법 선택

